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린이집 폐지 등 신고시 영유아 권익보호조치
법률로 상향 규정 등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93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어린이집 폐지 등 신고시 영유아 권익보호조치 법률로 상향 규정 등	3
(1) 어린이집 폐지 등의 신고시 영유아 권익보호조치 법률로 상향 규정	5
(2)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등 신고 절차 마련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4.

3. 회부연월일 : 2025.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원아의 사전 퇴원을 요구한 사례가 파악되는 등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과 휴원 통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이 침해를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운영 중단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

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어린이집 폐지 등 신고시 영유아 권익보호조치 법률로 상향 규정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재개하려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모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 등을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13조제1항에----- ----- ----- -----

<신 설> <신 설> ② (생 략)	----- ----- -----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 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 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 야 한다. 1.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운영 중 단 예정일 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1) 어린이집 폐지 등 신고시 영유아 권익보호조치 법률로 상향 규정

□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43조1)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권익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영유아의 권익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2)에서 정하고 있는데, ①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②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폐지·휴지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1)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③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관련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보호자에게 원아의 사전 퇴원을 요구한 사례가 파악되는 등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과 휴원 통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이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신고를 하는 경우 현행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을 강제하고자 구체적인 신고 절차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전원조치 등 영유아의 권익보호조치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 제43조제1항 후단의 신설 내용은 현행법령에 미규정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경우 인가 신청 전에 ‘유치원 폐쇄’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등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25.11.11.)된 바 있음.³⁾

□ 다만, 개정안 제43조제1항 후단의 신설 내용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는 보호자 등 사전 통지 절차의 ‘통지의무 기준 시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준일을 현행 시행규칙 기준(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으로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규칙의 비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3) 동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제2209660호)은 대안반영 폐기되어, [221288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본회의 의결('25.10.26.)됨

<u>알려야 한다.</u> <u>1.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u> <u>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u>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한편, 현행법은 제44조·제45조·제56조⁴⁾에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한 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전체 어린이집의 폐원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2,238~3,041건 수준이고,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는 연간 17~24건 수준임.

4)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6조(과태료) ②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폐원 현황]

(단위: 건, %, 개소)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1~8월)
폐원신고 (건)	전체 국공립	2,868 (30)	3,041 (30)	2,679 (56)	2,238 (90)	1,636 (62)
폐원비율 (%)	전체 국공립	8.6 (0.6)	9.8 (1.1)	9.3 (0.9)	8.2 (1.4)	6.3 (0.9)
전체 어린이집 (개소)	전체 국공립	33,246 (5,437)	30,923 (5,437)	28,954 (6,187)	27,387 (6,521)	26,161 (6,692)

* 자료: 교육부

[어린이집 폐지 · 휴지 · 재개 신고 의무 위반 현황]

(단위: 건)

근거법령	행정처분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제7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12	11	8	12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및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 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폐쇄	4	1	7	6
	운영정지	0	1	5	0
제56조(과태료)	과태료	4	4	3	6

주: 연도는 지자체의 시정·변경 명령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일자를 기준으로 구분

* 자료: 교육부

(2)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등 신고 절차 마련

□ 어린이집의 설치 및 폐지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의 규정을 보면,

①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으로 현행법 제12조⁵⁾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인가 절차 없이 직접 설치·운영하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폐지 등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반면, ②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설치 절차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폐지 등 신고 절차를 두고 있는 차이가 있음.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12.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이에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대한 절차 미비와 관련하여,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제43조제1항 전단을 신설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재개하려는 경우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는 설치·운영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①폐지 내부계획 수립, ②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③폐지 사전통지 및 전원조치 등을 거쳐 처리하고 있다는 의견임.

이에 개정안 제43조제1항 전단의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대한 절차’ 신설은 현재도 실무적으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⁶⁾를 거치고 있다는 점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른 지도·감독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음.

- 참고로, 각 개별법에 따라 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⁷⁾에 관한 사무는 시

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도교육청(교육감)이 관장하나, 어린이집의 경우 관리·감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

- 한편, 시도교육청(교육감)의 지도·감독 체계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경우에 설립 또는 폐쇄(폐교) 등에 대하여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감 인가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법령상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개정안의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운영 중단 등에 대한 절차’ 신설은 현행법상 지도·감독 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의 폐지 등 사전 통지 절차 마련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지의무 기준 시점을 현행 기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